

『서울강남지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1.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소비를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 숙소비는 해당 주택 임차 실거래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소비 산정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2. 사업주가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는 해당 임차계약서상의 실거래가를 넘지 않도록 하고,
 - 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 주거하는 경우 월세 등 숙소비는 근로자가 공동 부담(1/N)을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부과한다.
3. 사업주가 본인 소유의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는 해당 주택의 주변 주택의 실거래가 등을 참조하여 결정하며, 주변 참조할 만한 실거래가 등이 없는 경우 '서울강남지청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4. 가설건축물(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등 주거환경 개선 지침(2021.1월)상 숙소제공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서울강남지청에서 제시한 해당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가이드라인 월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서울강남지청 내 고용허가 사업장은 주로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 지역의 경우 월세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월세 기준은 '구' 단위로 실거래가의 중간값(50%)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그 기준은 붙임과 같다.

* 임차료에 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2%)을 기준으로 산정

『서울강남지청』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서울시 강남구]

구분	가이드라인 (3.3m ² 당 월세액)	최저가 (3.3m ² 당 월세액)	산정 기준
단독/다가구	79,109원 * 기존금액: 77,321원	3,274원	2026. 1. 1.~5. 31. 평당(계약면적) 실거래가의 중간값*
아파트	136,179원 * 기존금액: 130,890원	5,532원	
연립/다세대 (빌라, 원룸 등)	103,085원 * 기존금액: 102,550원	15,980원	

* 실거래가의 중간값: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서 해당기간 동안 거래된 주택 유형별 모든 거래값의 중간 가격으로 가이드라인의 산정 기준값

- 가이드라인 금액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주택에 다수(N명)이 거주하는 경우 또는 N명의 거주를 예상하고 임차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과 액수는 1/N 이하로 산정되어야 함

공제 동의서

사용자 _____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금을
 외국인근로자 _____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다음과 같이 (숙소비만,
 식비만, 숙소비와 식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공제 항목

- 숙소비 : 월 _____원을 공제한다.
- 식비 : 월 _____원을 공제한다.

 공제내역 교부

-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외국인근로자 _____ 본인은 상기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근로자

(서명)